

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

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「2024년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I. 보조사업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'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- (사업내용)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
- (사업기간) '24.1 ~ 12월, 보조금 소진 시까지
- (사업규모) 총 1,933백만원 (국비기준)

2. 지원대상 및 기준

- (지원대상) 의료시설·노유자시설·지역아동센터·청소년수련원·다중이용업(고시원·목욕장·산후조리원·학원)시설 중 화재취약* 건축물

* 3층 이상으로서,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
다만,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㎡ 미만 건축물에 한함

분류	세부용도	화재취약요인		
		가연성외장재 사용	스프링클러 미설치	1층 필로티 주차장
피난약자 이용시설	의료·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	●	●	무관
다중이용업소 (건축물 연면적 1천㎡ 미만)	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	●	●	●

- (지원한도) 총공사비 40백만원/동, 국가:지방:자부담 = 1:1:1
- (보강방법)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,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,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

3. 신청절차

-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(LH)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, 이후 시·군·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

신청주체	신청내용	신청기간
(소유자)	‘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’(서식1)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(LH)로 신청	공고일 ~ 보조금 소진시 까지
↓		
(LH)	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 등 지원	-
↓		
(시·군·구)	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강계획 승인 * 「건축물관리법」 제28조	-
↓		
(시·도)	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시·도별 총괄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 및 사업 신청	-

II.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

- 문의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, 507호
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

* 홈페이지 : <https://www.firesafety.or.kr> / 연락처 : 031)250-8312, 8315, 8316

※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

붙임: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. 끝.